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998

발의연월일: 2025. 3. 17.

발 의 자:백혜련·김준혁·정동영

박지원 • 추미애 • 이수진

진선미 • 전진숙 • 서미화

남인순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복무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상 내란의 죄·외환의 죄, 「군형법」상 반란의 죄·이적(利敵)의 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 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,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 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군인이 퇴직 이후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급여의 지급을 정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.

이에 내란의 죄 등 중대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복무 중의 사유뿐만이 아

닌 퇴직 후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중대범죄로 인한 퇴직급여의 지급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38조제4항). 법률 제 호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4항 중 "복무 중의 사유로"를 "군인 또는 퇴직한 군인이"로하고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퇴직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서 지급받은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여금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38조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정 혅 행 개 아 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38조(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) ① ~ ③ (생 략)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복무 중의 사유로 「형법」 ④ 군인 또는 퇴직한 군인이--제2편제1장(내란의 죄) · 제2장 (외환의 죄), 「군형법」 제2편 제1장(반란의 죄) · 제2장[이적 (利敵)의 죄]. 「국가보안법」 (제10조는 제외한다), 「군사기 밀 보호법 | (제13조의2와 제15 조에 한정한다)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 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 하되.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 다. <단서 신설> --. 다만, 퇴직급여를 이미 지 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 액 중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 에서 지급받은 기여금을 제외 한 나머지 기여금에 「민법」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한다.